

# 『靖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 A Study on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

진 나 영(Na-Young Jin)\*  
송 일 기(Il-Gie Song)\*\*

### 목 차

- |                       |                |
|-----------------------|----------------|
| 1. 緒 論                |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
| 2. 『靖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 4. 錄券의 內容 分析   |
| 受給者                   | 5. 結 論         |

### 초 록

『정국원종공신녹권(靖國原從功臣錄券)』은 중종이 1507년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반정에 힘쓴 신하들을 정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정국원종공신녹권』 2책을 대상으로,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그들의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삽적된 흔적이 있어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국원종공신녹권』은 초주갑인자의 금속활자본으로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432종의 직함에 모두 3,340명(1등 418명, 2등 1,016명, 3등 1,906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술되었으며 1등원종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과 3등에 비해 높았으며 문관이 무관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을 4종의 신분(身分)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양반 2,376명, 중인 494명, 양인 272명, 천인 1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ABSTRACT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靖國原從功臣錄券) is a book that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helped the King Jung-Jong's revolu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two books of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The result shows that,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 was printed with the Choju-Gapin (初鑄甲寅) letter metal movable types. This book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卷首), the body(本文), and the end(卷末). *Jeong-Kuk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3,340 persons(1st grade: 418 persons, 2nd grade: 1,016 persons, 3rd grade: 1,906 persons) with 432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social status confirmed that 2,376 persons were "Yang-ban(兩班)"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2,376 persons: 71.1%), "Jung-in(中人)" were second group(494 persons: 14.8%), "Yang-in(良人)" were 272 persons(8.2%) and "Chun-in(賤人)" were 198 persons(5.9%).*

키워드: 『靖國原從功臣錄券』, 『原從功臣錄券』, 정국공신, 정국원종공신, 초주갑인자, 중종반정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 Wonjong Gongsin-Nokgwon, Jeong-Kuk Gongsin, Choju-Gapin letter type, Gyeong-Jin letter type, the King Jung-Jong's revolutio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jny415@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1일 계재확정일자: 2012년 10월 3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7-60,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027]

## 1. 緒論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에게 공신증명서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반사(頒賜)한 것으로, 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하는 제도는 고려시대의 것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도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태조로부터 영조대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는데 정공신(正功臣) 책봉이 있은 후에 그들보다는 공이 작은 이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책봉하였다. 조선 초기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공신(佐命功臣)을 제외하고는 정공신에게는 공신교서(功臣敎書)를,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을 발급하였다. 대체로 원종공신의 수는 정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원종공신 개개인에게 녹권이 모두 발급되어 그 수가 많아야 하는데, 현존하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 공신녹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원종공신녹권』은 책 자체의 형태 및 내용 연구를 통해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 및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살필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특히 반사시기가 분명하여 이를 통해 서지적인 특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의 대상 녹권인 『정국원종공신녹권(靖國原從功臣錄券)』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이른바 중종반정의 공을 세워 1507(중종 2)년에 반사된 것으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이다. 정국공신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역사학 분야

에서 수행되었으며 서지학 분야의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국원종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녹권 수급자의 가계와 녹권 편찬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서지적 검토를 하였다. 또한 녹권에 등재된 인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당시 서적 인쇄 문화와 함께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관직제도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녹훈자의 보상제도가 어떠했는지 그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녹권에 삭적된 부분이 있어 어떤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지워지게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정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그 반사사유를 알아보고, 현전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보며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과 신분(身分)에 대해 각각으로 분석하여 원종공신의 논공행상을 포함한 그 당시 포상제도의 현상을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녹권의 삭적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른 문헌을 참고하여 확인하겠다.

## 2. 『靖國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 2.1 頒賜事由

정국공신(靖國功臣)은 1506(중종 1)년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506년인 연산군 12년 7월 20일, 연산군의 큰 어머니인 승평부부인 박씨가 많은 의혹 속에서

죽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씨의 동생인 박원종(朴元宗)이 연산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연산군의 공포정치에 대한 불평을 가졌다. 박원종은 신윤무(辛允武)와 성희안(成希顏)과 합심하여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배다른 동생 진성대군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무사(武士)들을 중심으로 동지들을 늘려나갔으며, 연산군이 도성을 떠나 개성으로 행차한다는 같은 해 9월 2일을 거사일로 잡았으나 9월 1일에 날씨가 좋지 않아 연산군이 개성행차 계획을 미루자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거사를 참여하기로 한 무사들에 의해 한양에 반정소문이 쪽 퍼지게 되어 그날 밤에 거사를 치루게 되었다. 거사 소문을 듣고 문무백관(文武百官) 등 핵심 관료들이 참여했으며 유자광(柳子光)도 이에 동참하였다. 그는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세조의 신임을 얻었고, 예종 즉위 후 남이(南怡)의 역모를 고변하였으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에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주동한 무장(武將)이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은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경복궁의 대비에게 승낙을 받아 창덕궁으로 가서 연산군에게 옥새를 받았다. 9월 2일, 연

산군을 대신하여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반정이 성공한 후, 박원종 등은 거사에 참여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올렸다. 이들 박원종, 성희안 등 반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공로자의 등급에 처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9월 8일, 이들을 포함하여 4등급으로 구분된 정국공신이 책봉되었다.

정국 정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들은 중종반정을 성공시킨 중심인물들로서, 처음에는 1등 병충분의협책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에 유자광, 신윤무 등 5명, 2등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에 이효성, 심순경 등 13명, 3등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에 고수겸, 심정, 채수 등 83명을 뽑아 총 101명을 상계(上啓)하였다.

그 뒤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의 천거로 1등으로 녹공(錄功)되면서 1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가

〈표 1〉 靖國 正功臣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8	朴元宗, 成希顏, 柳順汀, 柳子光, 辛允武, 朴永文, 張珽, 洪景舟
2등	13	李孝誠, 沈順徑, 邊修, 崔漢洪, 尹衡老, 曹繼商, 柳洵, 金壽童, 金勸, 李誠, 李季南, 具壽永, 李濢
3등	31	高守謙, 沈亨, 黃坦, 柳世雄, 柳繼宗, 尹士貞, 李深(申深), 李軾, 閔懷發, 閔懷昌, 許礽, 張溫, 具賢輝, 白壽長, 李克貞, 李碩蕃, 金友曾, 申浚, 鄭眉壽, 朴鍵, 宋軼, 姜渾, 韓恂, 柳徑, 金壽卿, 鄭允謙, 金敬義, 李菡, 沈貞, 尹湯老
4등	65	卞雋, 邊士謙, 韓叔昌, 朴而儉, 柳漢, 成希雍, 尹衡, 辛允文, 洪景霖, 姜漬, 尹金孫, 柳應龍, 尹坦, 申壽麟, 趙世勛, 韓世昌, 李孟友, 尹汝弼, 李盛同, 李宗義, 許礽, 李翰元, 柳泓, 李夔, 成樸, 趙元倫, 金壇, 閔孝曾, 朴永昌, 金克成, 黃孟獻, 成夢井, 李世應, 張漢公, 韓斯文, 金任, 趙繼殷, 李讓, 朴而溫, 李成彥, 辛殷尹, 尹熙平, 康允禧, 李敵, 崔有井, 蔡壽, 柳承乾, 曹繼衡, 李燦, 尹璋, 朴永賛, 李希壅, 孫全, 禹鼎, 文致, 徐敬生, 金繼恭, 金叔孫, 金銀, 任元山, 權鈞, 金俊孫, 金斌, 潘佑亨, 李坤
合計	117	* 굵은 글씨는 후에 사훈된 사람임.

폐폐해져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를 고려해 3등 83명 가운데 심정 이상 30명을 3등으로, 변준 이하 53명을 4등 분의(奮義) 정국공신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권균, 김준손, 반우형, 이곤, 우정, 김무 등 6명과 내관(內官) 문치, 서경생, 김계공, 김숙손, 김은, 임원산 등 모두 12명이 4등에 추가됨으로써 116명으로 늘어났다. 후에 윤상로가 3등 제31번으로 농공됨으로써 1등 8명, 2등 13명, 3등 31명, 4등 65명 등 모두 117명이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이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많은 공신의 수였다.

그러나 정국 정공신 중에 삭훈된 경우가 많은데 『실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1507(중종 2)년에 유자광이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된 인물로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공신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탄핵되어 4등이었던 그의 사위 손동과 손자 유승건도 삭훈되었다.<sup>1)</sup> 또한 1513년에는 신윤무, 박영문이 모반죄로 참형을 당해 삭훈되자<sup>2)</sup> 후에 4등이던 신윤무의 사위 박영분도 삭적되었다.<sup>3)</sup> 1514년에는 연산군대에 승지(承旨)였던 윤장, 조계형, 이우를 삭훈하였으며,<sup>4)</sup> 1518년에는 이희옹이 탄핵을 받았다.<sup>5)</sup> 그래서 모두 10명이 삭적되자 정국 정공신은 1518년에 1등 5명, 2등 13명, 3등 31명, 4등 58명으로 총 107명이 되었다. 이들은 반정의 최초 주모자를 포함하여 주로 무신들과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1507년 4월 20일에는 중종반정에 힘쓴 정공

신을 도와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으며, 그들의 처우에 대해 명하였다.<sup>6)</sup> 이렇게 책봉된 원종공신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모두 3,340명에 달하였다. 1등원종공신은 418명, 2등원종공신은 1,016명, 3등원종공신은 1,906명이었다.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2등 및 3등원종공신은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며 신분이 낮은 노비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책봉된 공신의 성분을 보면 지나치게 종친 및 공신의 친척들이 많이 책봉되어 공신 집단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 세력이자 공신 계열이었던 훈구(勳舊) 세력이 중종반정으로 책봉된 비(非)공신 세력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유자광 및 여러 공신들과 그들의 친척들 등 76명이 삭훈되었다. 이는 중종대에 사림파(士林派)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2.2 受給者

연구 대상본인 부안김씨종중의 고문서인 보물 제900-6호 『정국원종공신녹권』의 앞부분에 녹권을 받는 대상인 수급자(受給者)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는 녹권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으

1)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4月 23日 丙申條.  
 『朝鮮王朝實錄』, 中宗 2年 5月 1日 癸卯條.  
 2)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10月 28日 壬戌條.  
 3)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11月 9日 癸酉條.  
 4) 『朝鮮王朝實錄』, 中宗 9年 2月 15日 己酉條.  
 5) 『朝鮮王朝實錄』, 中宗 13年 11月 19日 乙卯條.  
 6) 靖國功臣都監 編. 『靖國原從功臣錄券』.

로서, 본 연구 대상본의 수급자는 '정랑(正郎) 김석필(金錫弼)'이다.

수급자 김석필(?-?)은 자(字)는 공언(公彥)이며, 본관은 부안(扶安)이고 전라북도 부안 옹정(瓮井)에서 태어났다. 1498(연산군 4)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502(연산군 8)년 임술(壬戌) 별시(別試)에 3등 7위로 급제하였다. 벼슬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대교(待敎), 이조정랑 겸 수찬관(吏曹正郎兼修撰官)을 역임하였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원종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으며, 당시 직함은 정5품인 정랑임을 녹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응교(應敎), 한림(翰林), 설서(設書)를 지내고, 외직으로는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 옥천(沃川) · 의성(義城) · 덕원(德源) · 강릉(江陵)의 수령(守令)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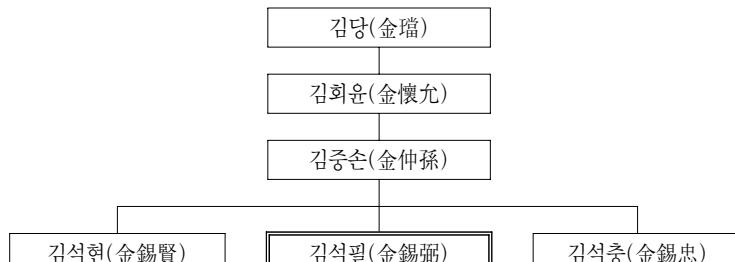
통행본인 『부안김씨세보(扶安金氏世譜)』의 보학 자료를 토대로 그의 가계를 작성해 보면 <그림 1>의 가계도와 같다.

수급자 김석필의 아버지 중손은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을 하다가 천거되어 남대지평(南臺持平)에 이르렀다. 이는 한정(閑亭) 김약회(金若平)에 이르렀다. 이는 한정(閑亭) 김약회(金若

晦)가 시직공(侍直公; 尹龜蒙)의 행장(行狀)에서 시직공의 조카인 김중손에 대해 쓴 내용에 나타나 있다.

김석필의 조부는 회윤으로, 행사온서사장(行司醴署直長),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와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를 역임했다. 그리고 김석필의 증조부는 당(璫)이며, 자는 옥이(玉耳)이고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중 하나인 용양위(龍驤衛)의 대호군(大護軍)을 지냈다.

김석필의 형 김석현은 기량이 준엄하고 호쾌하며 본디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근신하였다. 또한 박학하며 일을 열심히 하고 충효(忠孝)가 있고 행실이 바르다고 알려져 조정암(趙靜菴)의 『천목(薦目)』에 있다. 또한 석현은 1506년에 습독(習讀)의 관직에 올랐으며 동생 석필과 함께 1등 훈신이 되었다.<sup>7)</sup> 마지막으로 김석필의 동생 김석충은 승사랑(承仕郎)과 부호군(副護軍)을 지냈으며 그도 형들과 마찬가지로 정국원 종공신 3등으로 책록되었다.<sup>8)</sup> 이 가계도를 통해 형제가 같은 등급의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기존 연구를 통해 공신



<그림 1> 수급자 김석필의 가계도

7) 『扶安金氏世譜』에서는 1등 원종공신이라고 했으나 실제 녹권의 기록에 따르면 3등에 속한다. 오류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8) 扶安金氏大同譜所 編. 1960. 『扶安金氏世譜』. 扶安: 扶安金氏大同譜所.

의 직함 및 성명의 기재 규칙을 찾아보던 중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나란히 기록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등급으로 공신 책봉된 김석현과 김석충의 직함과 성명은 병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같은 가문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란히 기재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정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정국원종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 3.1 現存本 現況

현존본의 전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국내 · 외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정국원종공신녹권』은 2종인 것으로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靖國原從功臣錄券』의 傳存現況

No.	소장처	비고
1	개인 소장(부안김씨종중)	보물 제900-6호
2	성암고서박물관	-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국원종공신녹권』은 2곳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정국원종공신에 관한 내용이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상기의 녹권 자료를 통해 정국원종공신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등급별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그리고 정국공신도감에 대한 사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신분 및 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깨끗하고 양호한 편이며,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성암고서박물관본은 개인 소장본과 비교한 결과, 가장 앞의 한 장이 없는 채로 보관되어 누구에게 반사된 녹권인지 그 수급자 사항을 알 수 없다.

#### 3.2 形態 分析

연구 대상 자료인 『정국원종공신녹권』은 중종 대에 금속활자 중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1책이다. 초주갑인자는 1434(세종 16)년 주자소(鑄字所)에서 주조한 동활자로, 이천(李蕡)의 감독 아래 천문기기 제작의 과학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주성해냈다. 갑인자 자본(字本)은 경연청(經筵廳)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줄(爲善陰驚)』, 『논어(論語)』 등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뒤에 세조가 된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璫)가 썼다. 자체가 해정(楷正)하고 부드러운 필서체로 진(晉)나라의 위부인자체(衛夫人字體)와 비슷하다고 하여 일명 '위부인자'라 일컬기도 한다.<sup>9)</sup>

이 녹권은 선장(線裝) 형태로 제책이 되었으

9) 천혜봉. 1993.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48-49.

며, 표제(表題)는 '先代錄券'으로 필사되었다. 권수제(卷首題)는 녹권명이 아니라 공신과 관련 업무를 맡아본 기관인 '吏曹'가 기재되었다. 연구 대상본인 개인소장본 『정국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서지사항은 〈표 3〉과 같다.

### 〈표 3〉 『靖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

靖國原從功臣錄券 / 靖國功臣都監 編. - 初鑄甲寅 字本. - 漢城 : 吏曹, 中宗 2(1507)年.
1冊(58張) : 四周單邊, 半廓 25.1 × 16.9 cm 有界, 10行 17字, 細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 35.0 × 21.9 cm.
表題名 : 先代錄券
板心題 : 原從功臣錄券
印記 : 吏曹之印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廓)의 크기는 25.1×16.9 cm이며, 전체 책의 크기는 35.0×21.9 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10행 17자씩 배자되었고, 계선(界線)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版心部)에는 '原從功臣錄

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어미(魚尾)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란과 계선, 그리고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눈이 보이며 이를 통해 활자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장(印章)은 「吏曹之印」으로, 대부분의 녹권은 수급자가 기재된 권수제면(卷首題面), 특전 및 포상규정을 명한 면, 평난공신도감의 구성원들을 표기한 면 등 세 곳에 주인(朱印)되는 것에 비해 본 녹권의 인장은 주인된 곳이 다수이며 그들의 공통점이나 규칙을 찾아볼 수 없다.

### 3.3 體制 分析

연구대상본 『정국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조와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 책봉

### 〈표 4〉 『靖國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記
卷首	卷首題	發給機關	여러 군데에 「吏曹之印」朱印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여러 군데에 「吏曹之印」朱印
	傳旨	傳旨……(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都監員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와 手決	

과 관련된 봉교일(奉教日)과 봉명자(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씨(姓氏) 그리고 수결(手決)로 구성되었다.

### 3.3.1 卷首

『정국원종공신녹권』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하였다. 권수제는 공신 책봉 및 녹권 발급 관련 기관인 '吏曹'가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의 직함과 성명만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녹권이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나 수급자의 직함, 성명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필사되어 있다. 녹권의 수급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3.3.2 本文

본문은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507년 4월 20일, 왕이 이조에 공신을 책봉하는 명을 받은 사람은 행도승지(行都承旨) 홍경주(洪景舟)<sup>10)</sup>이다. 다음 행에는 '傳旨'를 표

〈표 5〉『靖國原從功臣錄券』의 本文 내용

순서	내용	奉命者
1	正德 2(1507)年 4月 20日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行都承旨 洪景舟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正德 2(1507)年 4月 20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 吏曹 담당	行都承旨 洪景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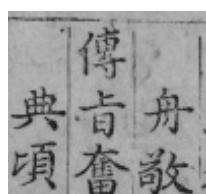
10) 생몰년은 ?-1521(중종 16)년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제옹(濟翁), 봉사 홍임(洪任)의 아들이며, 딸이 중종의 후궁 희빈홍씨(熙嬪洪氏)이다. 1501(연산군 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를 거쳐, 1504년 지평에 올랐다. 연산군이 국정을 어지럽혀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1506(중종 1)년 박원종·성희안 등이 중종반정을 도모할 때,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으로 신윤무·박영문 등과 함께 군대 동원의 책임을 맡아 거사를 성사시켰다. 그 공으로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으며, 동부승지에 올랐다. 곧이어 도승지에 오르고, 품계가 자현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이듬해에 이과(李顥) 등이 견성군(甄城君: 성종의 아들)을 옹립하려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처리한 공로로 정난공신(定難功臣) 2등에 다시 책록되었다. 이어 병조판서에 올라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하여 경연에서 국사를 논의하였다. 그 뒤 판중추부사로 잠시 옮겼다가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좌참찬·좌찬성을 지냈다.

이때 조광조(趙光祖) 등 사람들이 정부 요로에 대거 등용되어 훈구세력을 비판하며, 공로 없이 정국공신에 책록된 자가 많다고 하여 그 개정을 요구하니, 1516년 그는 정국공신의 명단을 개정하는 척하면서 남곤(南袞)·심정(沈貞) 등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사람을 숙청하였다. 그 뒤 판중추부사를 거쳐 좌찬성을 다시 역임하고, 1521년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cited 2012. 8. 29]. <<http://people.aks.ac.kr/index.aks>>.)

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전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 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靖國原從功臣錄券』의  
傳旨 부분

『정국원종공신녹권』에 기록된 중종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성을 멀치고 위태함을 구제한 신하의 직분은 왕의 법에 따라 공훈을 기록하고 상을 내린다. 중간에 국운이 비색하여 종묘사직이 장차 무너졌다. 과덕(寡德)한 내가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신하들의 협조와 추대로 외람되어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 친척, 옛 동리 사람들, 평소에 보호했던 사람들, 수종(隨從) 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들, 경사(卿士)가 아래로 복례(僕隸)에게 미쳐 분주히 힘을 바친 사람들,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다. 내가 참으로 그를 기쁘게 여기니 감히 어찌 잊겠는가. 마땅히 포상(褒賞)과 은전(恩典)을 보여서 시종(始終) 한결같은 의리를 굳게 하노라.<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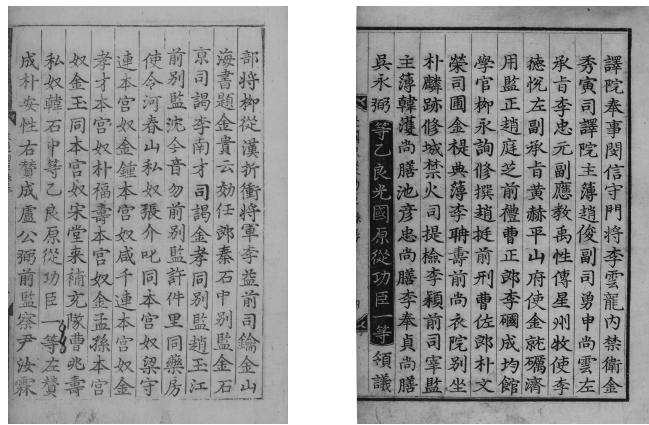
11) 吏曹 編. 『靖國原從功臣錄券』.

傳旨奮忠匡危臣子之職紀勳頒賞王者之典。頌者國運中否廟社將墮予以寡德長于宗戚幸賴同德之臣協贊推戴叨居大位。或戚屬之親 或里閈之舊 或保護有素 或隨從有勞上 或卿士下逮僕隸奔走効力 咸有原從之功。予實嘉之其敢忘哉。當示褒賞之典以堅終始之義。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국원종공신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데 힘을 썼기에 책봉되었음이 확인된다. 전지의 내용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418명, 2등은 1,016명, 3등은 1,906명의 원종공신 3,340명이 차례로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等乙良原從功臣○等'이라고 나타내어 등급간 구별을 하였다. 이 부분은 묵등(墨等) 등과 같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예와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같은 가문의 형제들이 부분적으로 함께 나열되어 있다.

직함 기술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광국원종공신녹권』의 경우는 소속 기관 등을 함께 기재하여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정국원종공신녹권』의 직함 기술은 그리 자세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 판관(判官)의 직함을 나타낼 때에는 소속 기관인 사역원(司譯院)을 붙여 '司譯院判官○○○'라고 기재했으나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그저



〈그림 3〉 녹권의 등급간 구별 표시

‘判官○○○’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교한 〈표 6〉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천인인 노비의 경우는 다른 녹권의 기재된 내용에 비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 어느 소속의 노비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를 비교한 녹권의 사진은 〈표 7〉과 같다.

또한 성명의 경우는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녹권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창녕(昌寧) 성(成)씨의 경우 같은 등급인 1등의 한 부분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창녕성씨족보』를 찾아보니 녹권에 기재된 성희건·성희중·성희적·성희문·성희주는 창녕 성씨 11세의 인물들로 형제 관계이다.

〈표 6〉 職銜 記述의 비교

녹권 발췌 부분	직함 기술 부분	녹권 발췌 부분	司譯院 所屬
判官	李允榮	司譯院判官	申應澍
內禁衛	具世璋	朴麟禧司譯院副正	朴麟禧
前監察	具世健	司譯院直長	洪明彦
內禁衛	金錡	司譯院奉事	韓潤傑
部將	柳璋	司譯院前銜	金吉孫
內禁衛	柳栽	司譯院前銜	趙安義

『정국원종공신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표 7〉 奴婢 職銜 記述의 비교

『정국원종공신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p>鄭光代內贍寺奴李江訓鍊院奴李知禮 賓寺奴趙守萬工曹奴白伊司園署奴崔 莫同漢城府奴金銀同展勤鄭金勿金刑 曹奴鄭莫實展勤鄭莫只展勤鄭嚴孫 展勤鄭李金同展勤鄭朴今同鑄工監奴 張終孫內贍寺奴車順山官奴李升允別 監金貴同別監卞仲石忠勲府奴卞今石 尚衣院奴秦石存妻子柳木同忠翊府奴 林山別監金孝恩司鑄崔者古未私奴李 先伊內需司奴韓令山私奴張石乙石別</p>	<p>業男火地臣朴福希馬醫黃允慎書吏宋 軒義州官奴四孫義州官奴貴仁同講肄 習讀崔填講肄習讀高慶齡司譯院前衛 朴禮儉司譯院直長趙玉司譯院奉事方 夢賚典醫監直長李敍臣惠民署前衛祭 禮剛馬醫林有聃馬醫高宗壽書吏金麟 瑞養馬尹玄養馬黃萬福義州官奴末乙 終義州官奴萬里義州官奴德奇保人洪 者民惠民署前衛尹瑛典醫監直長金應 河東節校尉李穗保人韓百年保人洪至</p>

『정국원종공신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가장 앞에 기재된 효력부위 성경은 창녕 성씨 12세로 확인된다. 성씨 가운데 이담손(李聃孫)이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창녕 성씨 11세인 성희윤의 아내는 완산(完山) 이(李)씨로, 그의 오빠가 이담손이다. 이를 정리하면 창녕 성씨 11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후손 혹은 이 가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병기(并記)되었다. 그러나 모든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이 모두 같은 가문끼리 기재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된 현상을 보인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과 그들의 관계도는 〈표 8〉과 같다.

〈표 8〉 同姓의 가족 관계의 사례

녹권 발췌 부분	昌寧 成氏 家系圖 <sup>12)</sup>
<p>官成希文學生成希周學生辛允儉副司 効力副尉成環將仕鄭成希騫監役成希 仲前上護軍李聃孫學生成希赤內侍教 尚衣院奴秦石存妻子柳木同忠翊府奴 林山別監金孝恩司鑄崔者古未私奴李 先伊內需司奴韓令山私奴張石乙石別</p>	

중종은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같은 날에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행도승지 홍경주'에게 전지하였다.<sup>13)</sup> 그 내용은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정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이전에 반사되었던 『좌리원종공신녹권』과 후에 발급한 『광국원종공신녹권』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확인한 결과, 정국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성종대의 좌리 원종공신의 것과 같다. 1등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부모를 봉작(封爵)하게 했다. 2등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

〈표 9〉 佐理 · 靖國 · 光國原從功臣에 대한 褒賞規程 및 特典 내용 비교

區分	褒賞規程			
	佐理		靖國	光國 <sup>14)</sup>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	-	-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	-	-
各等 通訓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 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 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 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 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敍用	並於本品敍用	並於本品敍用	並於本品敍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敍用	各加一資敍用	各加一資敍用	各加一資敍用
永不敍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並只還給	並只還給
妻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免賤	免賤
係干逆黨及因 亦賊公事間 事被罪者	-	-	-	官爵一隸舉行安徐

\* 굵은 글씨는 각 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을 나타냄.

12) 成綜護 編, 1974, 『昌寧成氏族譜』, 서울: 昌寧成氏大宗會.

13) 吏曹 編, 『靖國原從功臣錄券』.

14) 光國功臣都監 編, 『光國原從功臣錄券』.

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각 등급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범죄하여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본품(本品)에 서용(叙用)하며, 상(喪) 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 [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하며,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청(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며, 공천(公賤)·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표 9〉의 내용은 선조대에 책봉된 광국원종 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 9〉에 굵은 글씨로 표시가 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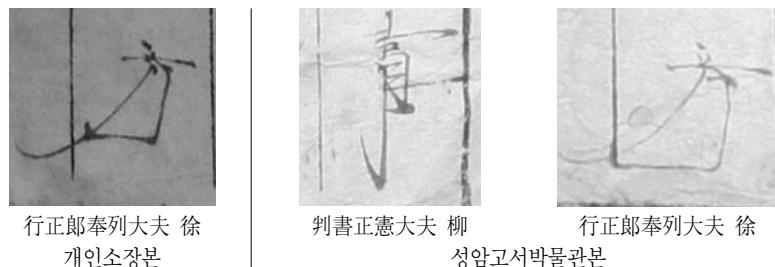
다. 이전에 반사된 녹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항목인 ‘係干逆黨及因亦賊公事間事被罪者官爵一隸舉行安徐’는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광국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죄리·정국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 3.3.3 卷末

권말에는 공신 책록을 위해 의정부·삼사(三司)와 함께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등급을 1·2·3등으로 나눠 훈호를 내리는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姓氏) 및 그들의 수결이 기재되었다. 이전 연구대상이었던 『좌익원종공신녹권』과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연구대상 녹권과 같이 구성되었으나 이후에 발급된 『평난원종공신녹권』과 『광국원종공신녹권』은 기관 구성원들의 성씨 대신 성명을 밝히고 그에 따른 수결은 생략했다. 연구대상 본을 바탕으로 『정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구성원들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官員의 官職·職銜 및 姓氏, 手決 有無

번호	관직·직함	姓氏	手決 有無	品階
1	判書正憲大夫	柳	無	정2품
2	參判嘉善大夫	鄭	無	종2품
3	參議通政大夫	金	無	정3품
4	行正郎奉列大夫	徐	有	정4품
5	行正郎朝奉大夫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	柳	無	종4품
6	守正郎奉直郎兼承文院校理	金	無	정5품
7	行佐郎奉訓郎	閔	無	종5품
8	行佐郎奉訓郎	李	無	종5품
9	行佐郎奉訓郎兼春秋館記事官	成	無	종5품



〈그림 4〉 녹권에 기재된 구성원의 수결

『정국원종공신녹권』의 권말에는 녹권의 발급을 담당한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 성씨 그리고 수결 등이 기재되었다. <표 10>을 확인해보니 『정국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은 모두 9명이다. 정현대부 1명, 가선대부 1명, 통정대부 1명, 봉렬대부 1명, 조봉대부 1명, 봉직랑 1명, 봉훈랑 3명 등 7개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의 품계는 정2품부터 종5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들로 구성되었다. 직함과 성씨를 토대로 누구인지를 파악하려 했으나 파악 가능한 사실들이 적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은 해당 정공신이 책봉된 이후, 다시 공신도감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원종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국공신 또한 이와 같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직함 및 관직, 성씨 다음에 수결을 하였는데, 모든 구성원이 수결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녹권이라도 수결한 사람이 동일하거나 수결의 유무도 각각 다르다. 이는 부재(不在) 중인 구성원에게는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녹권의 발급기관이 공신 책봉 업무가 있을 때에만 임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수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한 인출된 녹권이 3천여 권이 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많은 수의 녹권에 일일이 수결을 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장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에 기재된 공신들의 수결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行正郎奉列大夫”라는 직함을 지닌 “徐”씨의 수결은 개인소장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 모두 발견되었으며 같은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까지와는 달리 권말 부분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문까지는 활자, 즉 재주 갑인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였다. 이처럼 권말 부분을 목판으로 인쇄한 까닭은 관원의 직함을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모든 내용과 함께 성씨를 한 행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 4. 錄券의 内容 分析

이 장에서는 중종이 연산군을 폐하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크고 작은 공을 세워 책봉된 정국원종공신을 등급별로 직함과 이를 바탕으로 알아본 신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원수를 분석하여 정국원종

공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 4.1 等級別 分析

##### 4.1.1 靖國原從功臣一等

녹권에 기재된 정국원종공신 1등은 모두 418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해아려보면 188종

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기타를 제외하면 정3품으로 92명, 즉 전체의 약 22.0%가 이 품계에 속해있다. 그 다음은 종6품 50명이며 약

〈표 11〉 靖國原從功臣 1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尉	齊安大君, 完原君, 檜山君, 甄城君, 益陽君, 利城君, 景明君, 茂山君, 寧山君, 雲川君, 楊原君, 唐陽君, 高原尉, 宜城尉, 驪川尉, 宜川尉, 鈴平尉, 漢川尉, 清平尉, 鈴原尉, 奉城尉, 固城君, 凤山君	23	5.5
정1품	領中樞府事	1	0.3
종1품	-	0	0
정2품	知事, 兵曹判書, 知中樞府事	3	0.7
종2품	兼司僕, 同知中樞府事, 尚膳, 漢城府左尹	10	2.4
정3품	內禁衛, 都正, 牧使, 府使, 富安正, 司僕寺正, 上護軍, 宣傳官, 禦侮將軍, 禮曹參議, 前大司成, 前牧使, 前府使, 前副提學, 前上護軍, 前承旨, 前正, 折衝將軍, 正, 參知, 兼知中樞府事, 鷺城正, 鶴城正, 海安正, 行府使	92	22.0
종3품	建功將軍, 大護軍, 桃原副正, 副正, 松山副正, 殷正副正, 義新副正, 前副正, 前僉使, 直提學, 參校, 鐵城副正, 平臯副正, 興寧副正	21	5.0
정4품	內侍府, 岳溪守, 三山守, 商山守, 尚傳, 召城守, 薪谷守, 永山守, 莊城守, 陰平守, 益和守, 砥平守, 處仁守, 清城守, 葱谷守, 化寧守	18	4.3
종4품	經歷, 郡守, 德興副守, 陶城副守, 萬戶, 茂珍副守, 副護軍, 尚冊, 宣略將軍, 寧堤副守, 前經歷, 前郡守, 前僉正, 僉正	32	7.7
정5품	別坐, 司議, 司直, 前別坐, 前獻納, 正郎	16	3.8
종5품	都事, 令, 副司直, 蛇川令, 深岳令, 玉谷副令, 義山令, 判官, 縣令, 顯信校尉, 興福令	28	6.7
정6품	校檢, 敦勇校尉, 司果, 司謁, 司評, 前監察, 前司果, 前司鑰, 典籍, 佐郎	16	3.8
종6품	假部將, 副司果, 部將, 司畜, 尚洗, 宣務郎, 習讀官, 勵節校尉, 引儀, 前部將, 前主簿, 前縣監, 主簿, 察訪, 行縣監, 縣監, 效任郎	50	12.0
정7품	務功郎, 司正, 尚烜, 注書, 參軍	6	1.4
종7품	兼直長, 副司正, 奮順副尉, 直長	8	1.9
정8품	待敎, 司猛, 承義副尉	3	0.7
종8품	奉事, 副司猛, 修義副尉	9	2.2
정9품	檢閱, 司勇, 洗馬, 前訓導, 行司勇, 效力副尉, 訓導	8	1.9
종9품	監役, 監役官, 內侍敎官, 副司勇, 將仕郎, 展力副尉, 前參奉, 參奉	18	4.3
기타	同藥房使令, 別監, 補充隊, 本宮奴, 私奴, 司譯院前銜, 生員, 書題, 鷹牌頭, 前別監, 忠順衛, 忠義衛, 忠贊衛, 學生	56	13.4
合計		418	100

12.0%를 구성하고 있다. 그 뒤로 종4품 32명의 공신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또는 위<sup>15)</sup>의 직함을 가진 공신이 23명으로 5.5%를 구성하였다. 즉 정3품, 종6품, 종2품과 종4품의 품계와 군 및 위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 1등공신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된다.

정국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188종의 직함에 418명의 공신이 기재되었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을 기재한 직함은 무관인 내금위로, 28명이다.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인 학생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 23명으로 많았고, 군(郡)의 행정직을 맡아보던 장관직인 군수와 종5품 관직인 판관의 직함을 가진 공신은 각각 11명이다. 무관인 절충장군의 직함에는 10명의 공신으로 구성되었다.

1등공신들의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과 같이 총 418명의 1등공신 중에 문반이 260명으로 62.2%였고 무반이 123명으로 29.4%로, 문반이 무반보다 더 많았다. 기존 연구의 문·무반 비율과 비교해보았을 때 문반의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무반의 비율이 늘어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추대함에 있어 무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무반이 많이 참여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친 및 인척이나 군(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3명인 5.5%로 기존 연구된 녹권에서의 군에 해당하는 비율과 비교해보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나 위에 해당하는 직함 외에 종친이 가진 직함인 수(守) 혹은 정(正)의 관직을 지닌 공신의 수가 18명으로 그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다.

〈표 12〉 1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內禁衛	정3품	무관	28	6.7
2	學生	없음	문관	23	5.5
3	郡守	종4품	문관	11	2.6
	判官	종5품	문관	11	2.6
5	折衝將軍	정3품	무관	10	2.4
합계				83	19.8

〈표 13〉 靖國原從功臣 1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260	62.2
무반	123	29.4
종친 및 인척, 군	23	5.5
기타	12	2.9
합계	418	100

15) 본래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는 군의 품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군 및 왕의 친족에 해당하는 공신이 많으므로 분리하여 살펴보겠다.

## 4.1.2 靖國原從功臣二等

정국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1,016명이었으며 공신들의 직함은 433종으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를 통해 품계가 없는 기타에 해당하는 2등공신은 1,016명 중 340명으로 약 1/3 가

량임을 알았다. 기타를 제외하면 정국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공신 중 약 12.1%인 123명이 정3품이며, 그 다음으로는 80명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는 종6품이 많았으며, 정5품은 이보다는 적은 53명으로 5.2%를 이루었다. 1등공신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품계가 하위인 사람들이 2등공신으로 책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14〉 靖國原從功臣 2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尉	清原君, 咸川君, 南川君, 永春君	4	0.4
정1품	師傅	1	0.1
종1품	左贊成, 右贊成	2	0.2
정2품	-	-	0
종2품	兼司僕, 節度使	14	1.4
정3품	吉安正, 內禁衛, 大司諫, 牧使, 宣傳官, 禦侮將軍, 羽林衛, 右通禮, 前府使, 前承旨, 正, 兼知, 柴山正, 通訓大夫	123	12.1
종3품	建功將軍, 金壤副正, 豆原副正, 別侍衛, 保功將軍, 副正, 司諫, 司成, 森溪副正, 砥堤副正, 長堤副正, 前僉使, 助川副正, 僉使	40	3.9
정4품	蘭浦守, 內侍府, 德陽守, 德仁守, 明山守, 奉禮, 山陽守, 尚傳, 星山守, 昭威將軍, 巖城守, 驚山守, 戎城守, 掌令, 典籤, 鐵原守, 行護軍	31	3.1
종4품	經歷, 郡守, 萬戶, 副護軍, 尚冊, 宣略將軍, 朝奉大夫, 僉正, 行郡守, 洪陽副守	36	3.5
정5품	果毅校尉, 軍籍郎廳, 內需司別坐, 別坐, 尚弧, 翳衛, 前別坐, 典簿, 正郎, 贊儀, 通善郎	53	5.2
종5품	嘉柔令, 校理, 都事, 令, 迷谷令, 奉訓郎, 副司直, 尚帑, 瑞石令, 彰信校尉, 忠毅校尉, 判官, 漢山令, 縣令	38	3.7
정6품	監察, 道流, 敦勇校尉, 同司鑰, 別提, 司果, 司鑰, 司評, 承議郎, 承訓郎, 前監察, 前別提, 典樂, 典籍, 前佐郎, 正言, 佐郎, 評事	47	4.5
종6품	假部將, 教授, 秉節校尉, 副司果, 部將, 尚洗, 尚燭, 宣教郎, 宣務郎, 習讀官, 勵節校尉, 衛率, 引儀, 前縣監, 主簿, 察訪, 縣監, 效任郎	80	7.9
정7품	勝勇副尉, 務功郎, 博士, 奉教, 司正, 尚烜, 迪順副尉, 注書, 參軍	17	1.7
종7품	牽馬陪, 兼直長, 啓功郎, 副司正, 奮順副尉, 尚設, 直長	28	2.8
정8품	待教, 別檢, 司猛, 尚除, 承義副尉, 侍直, 著作, 通仕郎	26	2.6
종8품	奉事, 副司猛, 尚門, 修義副尉, 承仕郎, 前奉事	25	2.5
정9품	檢閱, 副奉事, 司勇, 尚更, 正字, 從仕郎, 學錄, 効力副尉, 訓導	38	3.7
종9품	假引儀, 監役, 監役官, 兼引儀, 勁力副尉, 副司勇, 副正字, 將仕郎, 展勤郎, 展力副尉, 前參奉, 參奉	73	7.2
기타	甲士, 貢生, 官奴, 觀象監前銜, 弓人, 內需司奴, 內資寺奴, 錄事, 大別監, 隊卒, 命課學前銜, 伴人, 補充隊, 本宮奴, 私奴, 司贍寺奴, 司譯院前銜, 尚衣院奴, 生員, 書吏, 書題, 樂工, 樂生, 幼學, 鷹牌頭, 醫員, 議政府奴, 壯勇衛, 前司僕, 正兵, 族親衛, 進士, 唱准, 清興守學生, 忠順衛, 忠義衛, 忠贊衛, 忠勳府奴, 親軍衛, 學生, 畫員	340	33.5
	合計	1,016	100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많은 점으로 보아 낮은 직함의 사람들도 공이 있으면 차별이 없이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정국원종공신 2등의 직함은 모두 43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함을 기준으로 비교적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에서 보듯이 11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함은 품계가 없던 학생이었고, 그 다음은 왕의 측근에서 호위를 맡았던 내금위가 90명으로 많았다. 또한 중종이 왕이 되기 전에 거처하던 곳의 노비들인 본궁노가 37명으로 많았으며, 문반 최말단 관직인 참봉이 27명,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되었던 충순위가 24명으로 확인된다. 특히 〈표 14〉를 보면 2등공신에는 품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함을 지닌 공신이 2등공신 인원의 약 1/3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국원종공신녹권』의 반사사유인 연산군 폐위 및

중종 추대에 있어 하급관리를 비롯한 군사에 해당하는 사람, 노비들이 많이 참여하여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수직계층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직함의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에 공이 있으면 모두 공신으로 책봉한 점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해볼 때 획기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6〉과 같다.

정국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공신 1,016명 중에 문반에 해당되는 공신은 575명으로 2등원종공신 중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무반은 372명으로 약 36.6%를 차지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한다. 다른 녹권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정국원종공신녹권』에서 공신으로 책봉된 무반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연산군 폐위 및 중종 추대하는 데 있어 군사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일 것이다. 종친 및 인척, 군(君)에

〈표 15〉 2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반	인원수	비율(%)
1	學生	없음	문반	119	11.7
2	內禁衛	정3품	무반	90	8.9
3	本宮奴	없음	없음	37	3.6
4	參奉	종9품	문반	27	2.7
5	忠順衛	없음	문반	24	2.4
합계				297	29.3

〈표 16〉 靖國原從功臣 2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575	56.6
무반	372	36.6
종친 및 인척, 군	4	0.4
기타	65	6.4
합계	1,016	100

해당되는 공신이 1등에서보다 그 비율이 줄었으나 군이나 위에 해당하는 직함 외에 종친이 가진 직함인 수(守) 혹은 정(正)의 관직을 지닌 공신의 수가 16명으로 그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다. 그밖에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들은 품계가 없는 직함 또는 노비에 해당하는 직함을 갖고 있거나 양인(良人), 갑사(甲士) 등이다.

#### 4.1.3 靖國原從功臣三等

정국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1,906명으로, 이들의 직함 및 관직의 구성은 260 종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함 및 관직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기준으로 이들을 품계별로 구분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靖國原從功臣 3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위	-	0	0
정1품	-	0	0
종1품	-	0	0
정2품	-	0	0
종2품	兼司僕	6	0.3
정3품	假內禁衛, 內禁衛, 牧使, 府使, 宣傳官, 禦侮將軍, 正, 兼知, 兼知中樞府事	131	6.9
종3품	加平副正, 建功將軍, 大護軍, 別侍衛, 保功將軍, 副正, 虞候, 前相禮, 兼使	53	2.8
정4품	內侍府, 泥城守, 保寧守, 奉正大夫, 尚傳, 昭威將軍, 守, 櫟陽守, 連山守, 翼城守, 翼安守, 典籤, 青溪守, 護軍	24	1.2
종4품	經歷, 郡守, 馬用副守, 萬戶, 副護軍, 宣略將軍, 永化副守, 才山副守, 前萬戶, 之略將軍, 兼正	17	0.9
정5품	假郎廳, 果毅校尉, 別坐, 司直, 翳衛, 前別坐, 典簿, 正郎, 通德郎, 通善郎	44	2.3
종5품	假都事, 德豐令, 都事, 奉直郎, 奉訓郎, 副司直, 西原令, 宜桑令, 前丞, 彰信校尉, 忠毅校尉, 判官, 漢江丞, 縣令, 顯信校尉	37	1.9
정6품	監察, 校檢, 道流, 敦勇校尉, 別提, 司果, 司謁, 司鑰, 承議郎, 承訓郎, 理馬, 前司果, 前司鑰, 典樂, 佐郎, 進勇校尉	47	2.4
종6품	假郎廳, 假部將, 教授, 飯監, 秉節校尉, 副司果, 部將, 尚洗, 尚燭, 宣教郎, 宣務郎, 習官, 習讀官, 勵節校尉, 律學教授, 引儀, 前主簿, 前察訪, 前縣監, 主簿, 察訪, 縣監, 効任郎	87	4.6
정7품	博士, 務功郎, 奉務郎, 司正, 尚烜, 赤城守司正, 迪順副尉, 前副率, 參軍	20	1.0
종7품	牽馬陪, 啓功郎, 副司正, 奮順副尉, 尚設, 承務郎, 典會, 直長	50	2.6
정8품	勉功郎, 別檢, 司猛, 算員, 尚除, 承義副尉, 侍直, 通仕郎	33	1.7
종8품	奉事, 赴功郎, 副司猛, 修義副尉, 承仕郎, 審律, 典穀	50	2.6
정9품	服勤郎, 司勇, 尚更, 前司勇, 前訓導, 從仕郎, 致力副尉, 行司勇, 効力副尉, 訓導	64	3.4
종9품	監役, 監役官, 勤力副尉, 副司勇, 尚苑, 驛丞, 將仕郎, 前監役官, 展勤郎, 展力副尉, 前驛丞, 前參奉, 典貨, 參奉	123	6.5
기타	甲士, 貢生, 工曹奴, 官奴, 觀象監前衛, 軍器寺奴, 軍資監奴, 弓人, 近仗, 羅將, 內瞻寺奴, 內需司奴, 內矢人, 內資寺奴, 路隊, 錄事, 隊卒, 燈燭, 明通寺奴, 伴人, 白丁, 別監, 補充隊, 本宮奴, 奉常寺奴, 私奴, 司導寺奴, 司僕, 司僕寺奴, 司僕寺諸員, 司瞻寺奴, 司譯院前衛, 司圖署奴, 尚衣院奴, 生員, 書吏, 書房色, 書員, 書題, 繕工監奴, 昭格署奴, 水軍, 守藏, 樂工, 樂生, 藥房使令, 養馬, 良人, 養賢庫奴, 驛子, 藝文館奴, 禮窟寺奴, 禮曹奴, 瓦署奴, 幼學, 義盈庫奴, 醫員, 仁壽府奴, 壯勇衛, 匠人, 長興庫奴, 前書房色, 典醫監前衛, 典錢官, 正兵, 濟用監奴, 諸員, 皂隸, 族親衛, 宗簿寺奴, 進士, 唱准, 千西學奴, 妻子, 忠順衛, 忠義衛, 忠翊府奴, 忠贊衛, 忠勳府奴, 吹螺赤, 漆匠, 大平疎, 通事, 彭排, 學生, 漢城府奴, 香匠, 向化, 刑曹奴, 戸曹奴, 畫員, 訓鍊院奴	1,120	58.9
	合計	1,906	100

〈표 17〉을 통해 3등원종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은 모두 260종이였으며, 가장 많은 공신들이 포함된 품계는 기타<sup>16)</sup>가 1,120명인 58.9%로 대부분의 3등원종공신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3품이 131명으로 6.9%였으며 종6품의 공신이 87명으로 약 4.6%를 이루었다. 이들을 1등 및 2등원종공신의 품계 분포현황을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품계가 낮은 직함의 공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군(君) 등의 왕의 친족이나 인척이나 품계가 높은 정1품-정2품의 공신은 없었다. 그러나 군이나 위에 해당하는 직함 외에 종친이 가진 직함인 수(守) 혹은 정(正)의 관직을 지닌 공신의 수가 14명이 있으나 이들의 품계는 정3품 이하로 낮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국원종공신은 등급이 높을수록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품계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

질수록 품계가 낮은 직함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906명의 3등원종공신은 260종의 직함에 따라 인원수가 각각 달랐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표 18〉과 같다.

3등원종공신 중에 〈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인 학생이 3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시대의 하급 품외(品外) 관원을 의미하는 서리가 171명으로 약 9.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내금위, 갑사, 별시위 등 군사들이 3등원종공신에서 많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위의 5종의 직함에 해당하는 공신의 수가 3등원종공신의 절반 이상이다. 특히 무반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9〉와 같다.

〈표 18〉 3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반	인원수	비율(%)
1	學生	없음	문반	345	31.5
2	書吏	없음	문반	171	9.0
3	內禁衛	정3품	무반	116	6.1
4	甲士	없음	무반	102	5.4
5	別侍衛	종3품	무반	41	2.2
합계				775	54.2

〈표 19〉 靖國原從功臣 3등의 文·武班 現況

區分	人員數	比率(%)
문반	1,074	56.3
무반	704	36.9
종친 및 인척, 군	0	0
기타	128	6.8
합계	1,906	100

16) 진사 등 관직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거나 신분이 낮아 품계를 갖지 않은 직함들을 말한다.

정국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도 1등·2등원종공신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반이 무반의 직함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그 비율을 살펴보면 1등과는 달리 2등·3등에서의 무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많아졌으며, 다른 녹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반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들, 즉 품계가 없는 직함을 지니거나 양인(良人) 혹은 노비[奴]인 공신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등·3등원종공신은 실질적으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추대하는 데에 힘쓴 군사나 하급관리들로 구성된 점을 알 수 있다.

#### 4.2 身分別 分析

조선시대 신분계층은 대체로 양반(兩班)·중인(中人)·양인(良人)·천인(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sup>17)</sup> 양반·평민(平民)·천민(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

반·중인·양인·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그 신분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네 개<sup>18)</sup>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 4.2.1 兩班

양반은 문·무반직(文·武班職)의 사람들 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예문관의 정9품직인 검열(檢閱) 등 117개의 직함<sup>19)</sup>은 각 1명, 관찰사 밑에서 목(牧)을 맡아 다스린 목사(牧使) 등 23종의 직함<sup>20)</sup>은 각 2명, 현(縣)의 수직(首職)인 현령(縣令) 등 7종의 직함<sup>21)</sup>은 각 3명이었다. 감역(監役) 등 5종의 직함<sup>22)</sup>은 각 4명으로 파악되며, 5위(衛)에 딸린 대호군(大護軍) 등 3종의

17) 韓永愚 著. 1997.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14-15.

18)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는 양·천중간(良·賤中間) 신분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1976.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 173).

1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永山守·玉谷副守·莞城守·鳳山君·完原君檢閱雲川君·兼直長·殷正副正·固城君·陰平守·校檢·義山令·內侍敎官·宜城尉·寧堤副守·義新副正·待敎·宜川尉·陶城副守·益陽君·都正·益和守·同知中樞府事·引儀·驪川尉·桃原副正·蛇川令·敦勇校尉·鈴平尉·勵節校尉·利城君·令·務功郎·鈴原尉·茂珍副守·前監察·奉城尉·前經歷·副司勇·前郡守·富安正·前大司成·司猛·展力副尉·司譯院前銜·前牧使·司正·前副正·司畜·前副提學·商山守·前司果·宣略將軍·前上護軍·召城守·前承旨·修義副尉·前獻納·薪谷守·前訓導·楊原君·齊安大君·監役官·注書·甄城君·知事·高原尉·知中樞府事·寧山君·砥平守·德興副守·察訪·禮曹參議·參校·茂山君·參軍·缶溪守·參知·奮順副尉·處仁守·司勇·鐵城副正·三山守·清城守·宣務郎·淸平尉·承義副尉·葱谷守·假部將·忠贊衛·景明君·効力副尉·唐陽君·鷺城正·萬戶·平臯副正·副司正·鶴城正·司直·漢城府左尹·松山副正·漢川尉·建功將軍·海安正·領中樞府事·顯信校尉·司僕寺正·化寧守·深岳令·檜山君·兵曹判書·訓導·內侍府·興寧副正·上護軍·興福令 등 117종이다.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牧使·別監·副司猛·副司直·副正·司果·司謁·司議·將仕郎·前別監·前府使·前部將·典籍·前正·前主簿·前參奉·前僉使·前僉正·佐郎·直提學·忠順衛·行司勇·行縣監 등 23종이다.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副司果·副護軍·司評·前縣監·僉正·行府使·縣令 등 7종이다.

직함<sup>23)</sup>은 각 5명이었다. 어모장군(禦侮將軍) 등 6종의 직함<sup>24)</sup>은 각 6명이며, 겸사복(兼司僕) 등 3종의 직함<sup>25)</sup>은 각 7명,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의 직함에는 각 8명 그리고 현감(縣監)의 직함에는 9명, 절충장군(折衝將軍)은 10명으로 조사되었다. 군수(郡守)와 판관(判官)의 직함에는 각 11명, 학생(學生)의 직함은 23명, 내금위는 모두 28명이었다. 즉 172 종의 직함을 가진 384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로 임명하던 종9품 가인의(假引儀) 등 80종의 직함<sup>26)</sup>은 각 1명, 계공랑(啓功郎) 등 22종의 직함<sup>27)</sup>은 각 2명이었고 주요 부서의 실무담당이었던 경력(經歷) 등 18종의 직함<sup>28)</sup>은 각 3명이었다. 부사과(副司果) 등 5종의 직함<sup>29)</sup>은 각 4명, 병

절교위(秉節校尉) 등 5종의 직함<sup>30)</sup>은 각 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군(郡)의 행정을 맡아보던 군수(郡守) 등 8종의 직함<sup>31)</sup>은 각 6명, 통사랑(通仕郎) 등 3종의 직함<sup>32)</sup>은 각 7명이었으며, 사헌부의 관직인 감찰(監察) 등 7종의 직함<sup>33)</sup>은 각 8명이었다. 첨정(僉正) 등 3종의 직함<sup>34)</sup>에는 각 9명이, 습독관(習讀官)과 장사랑(壯仕郎) 등 2종의 직함은 각 10명, 판관(判官) 등 4종의 직함<sup>35)</sup>은 각 11명으로 확인된다. 직장(直長) 등 4종의 직함<sup>36)</sup>은 각 13명, 별시위(別侍衛) 직함은 20명, 충의위(忠義衛)는 23명이며 충순위(忠順衛) 직함을 가진 공신은 24명이고 참봉(參奉)의 직함에는 27명이 속한다. 내금위의 직함을 지난 공신은 90명이며 학생은 모두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169종 직함에 795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役·經歷·生員·習讀官·僉知中樞府事 등 5종이다.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大護軍·都事·直長 등 3종이다.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奉事·禦侮將軍·正·正郎·參奉·忠義衛 등 6종이다.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兼司僕·府使·主簿 등 3종이다.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嘉柔令·假引儀·兼直長·觀象監前衛·校理·軍籍郎廳·吉安正·金壤副正·蘭浦守·南川君·待教·大別監·大司諫·德陽守·德仁守·豆原副正·令·命課學前衛·迷谷令·明山守·保功將軍·奉禮·奉訓郎·副奉事·副正字·司諫·師傅·司成·司評·山陽守·森溪副正·瑞石令·宣略將軍·星山守·昭威將軍·承議郎·承義副尉·侍直·巖城守·硯堤副正·永春君·鷺山守·右通禮·右贊成·衛率·幼學·戎城守·翊衛·長堤副正·著作·前監察·前別提·前奉事·前司僕·前承旨·前佐郎·前參奉·前僉使·前縣監·節度使·正言·助川副正·左贊成·注書·察訪·參軍·鐵原守·清原君·清興守學生·忠毅校尉·通善郎·評事·學錄·漢山令·咸川君·行郡守·行護軍·洪陽副守·明山守·贊儀·柒山正 등 80종이다.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役官·檢閱·兼引儀·啓功郎·敦勇校尉·牧使·務功郎·博士·別提·奉教·司正·承仕郎·掌令·迪順副尉·前府使·典籍·正字·朝奉大夫·彰信校尉·僉使·通訓大夫·教授 등 22종이다.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役·建功將軍·經歷·果毅校尉·都事·勵節校尉·副司正·部將·司果·司譯院前衛·宣傳官·宣教郎·承訓郎·羽林衛·典籤·正·僉知·縣令 등 18종이다.

2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副司果·副護軍·宣務郎·修義副尉·典簿 등 5종이다.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秉節校尉·副司直·副正·効力副尉·錄事 등 5종이다.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郡守·奮順副尉·司猛·引儀·正郎·族親衛·從仕郎·訓導 등 8종이다.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奉事·主簿·通仕郎 등 3종이다.

3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部將·監察·萬戶·副司猛·司勇·進士·忠贊衛 등 8종이다.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禦侮將軍·佐郎·僉正 등 3종이다.

3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內侍府·副司勇·判官·縣監 등 4종이다.

3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兼司僕·生員·展力副尉·直長 등 4종이다.

3등에서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관직인 시직(侍直) 등 63종의 직함<sup>37)</sup>은 각 1명, 사직(司直) 등 20종의 직함<sup>38)</sup>은 각 2명,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사무를 맡아본 도사(都事) 등 12종의 직함<sup>39)</sup>은 각 3명이었다. 정5품 무관에게 주는 과의교위(果毅校尉) 등 10종의 직함<sup>40)</sup>은 각 4명, 종6품인 교수(教授) 등 8종의 직함<sup>41)</sup>은 각 5명이었고 겸사복(兼司僕) 등 4종의 직함<sup>42)</sup>은 6명, 종6품 무관직 병절교위(秉節校尉) 등 2종의 직함<sup>43)</sup>은 각 7명으로 이루어졌다. 통사랑(通仕郎) 등 7종의 직함<sup>44)</sup>은 각 8명, 정8품 무관직 승의부위(承義副尉) 등 3종의 직함<sup>45)</sup>은 각 9명, 진사(進士)의 직함은 10명, 장사랑(將仕郎) 등 3종의 직함<sup>46)</sup>은 각 11명이었고 종사랑(從仕郎) 1종의 직함은 13명, 충찬위(忠贊衛) 등 1종의 직함은 15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봉사(奉事) 등 3종의 직함<sup>47)</sup>은 각 17명, 족친위(族親衛)는 18명이고 직장(直長)의 직함에는 19명, 녹사(錄事)와 효력부위(效

力副尉) 등 2종의 직함은 각 20명, 참봉(參奉)과 충의위(忠義衛) 등 2종의 직함에는 각 25명이 포함된다. 생원(生員)은 27명, 충순위(忠順衛)의 직함에는 37명, 전력부위(展力副尉)라는 직함을 가진 공신은 모두 40명이었다. 별시위(別侍衛)는 42명이고 내금위(內禁衛)는 117명으로 많았으며 학생이 3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1,197명이었고 모두 150종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국원종공신 3,340명 중 2,376명인 약 71.1%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니 1등은 172종 직함에 384명으로 1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약 91.9%로 대부분이 양반계층이었으며 내금위의 직함에 해당하는 공신이 28명으로 많았다. 2등은 169종 직함에 795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78.2%에 해당하며 학생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공신들이 119명으로 많은 수에 해당하였다. 3등은 150종 직함에 1,197명으로 3등공

- 3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內禁衛·假都事·加平副正·建功將軍·經歷·校檢·郡守·內禁衛·泥城守·大護軍·德豐令·敦勇校尉·櫟陽守·連山守·律學教授·馬用副守·萬戶·牧使·博士·飯監·別侍衛·保功將軍·保寧守·奉正大夫·奉直郎·府使·副正·司僕·司謁·司譯院前衛·西原令·守·習官·侍直·永化副守·宜桑令·翼城守·翼安守·才山副守·赤城守司正·前監役官·前萬戶·前副率·前司果·前司勇·前相禮·典醫監前衛·前察訪·典籤·前縣監·典貨·前訓導·典穀·正郎·佐郎·察訪·僉知·僉知中樞府事·忠毅校尉·通德郎·通善郎·縣令·顯信校尉·護軍·青溪守 등 63종이다.
- 3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察·副護軍·司正·司直·宣傳官·承訓郎·驛丞·虞候·幼學·翊衛·引儀·前丞·前驛丞·前主簿·典會·正·參軍·漢江丞·行司勇·忠略將軍 등 20종이다.
- 3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觀象監前衛·都事·務功郎·副司猛·部將·司猛·宣略將軍·承務郎·前參奉·進勇校尉·僉使·僉正 등 12종이다.
- 4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果毅校尉·奉訓郎·副司正·算員·宣敎郎·昭威將軍·承議郎·典簿·主簿·彰信校尉 등 10종이다.
- 4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監役·監役官·教授·別提·副司果·禦侮將軍·判官·訓導 등 8종이다.
- 4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兼司僕·啓功郎·宣務郎·縣監 등 4종이다.
- 4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勵節校尉·秉節校尉 등 2종이다.
- 4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郎廳·內侍府·奮順副尉·司果·承仕郎·迪順副尉·通仕郎 등 7종이다.
- 4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副司直·習讀官·承義副尉 등 3종이다.
- 4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假部將·副司勇·將仕郎 등 3종이다.
- 4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奉事·司勇·修義副尉 등 3종이다.

신의 전체 인원수 중 62.8%이며 학생이라는 직함을 가진 공신이 345명으로 가장 많았다.

#### 4.2.2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내시부(內侍府)<sup>48)</sup>의 상선(尙膳) 등 6종의 직함<sup>49)</sup>이 각 1명, 내시부 정7품 관리 상훤(尙煊)과 전별좌(前別坐) 등 2종의 직함에 각 2명, 상전(尙傳)과 상세(尙洗) 등 2종의 직함에 각 3명, 별좌라는 직함에 4명이 속하였다. 모두 11종의 직함에 20명이 이에 해당한다.

2등에는 임금 등의 말고삐를 잡고 다닌 견마배(牽馬陪) 등 14종 직함<sup>50)</sup>이 각 1명, 화원(畫員) 등 4종의 직함<sup>51)</sup>이 각 2명, 궁문(宮門)의 수직(守直)을 맡아본 상문(尙門) 등 3종의 직함<sup>52)</sup>이 각 3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훤(尙煊)이 4명, 의원(醫員)이 5명, 사약(司鑰)이 6명이었으며 말단 관리 서리(書吏)가 10명, 상호(尙弧)가 12명, 별좌(別坐)의 직함이 19명으로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하였다. 33종의 직함에 모두 118명이 중인으로 조사되었다.

3등에는 왕에게 지필묵(紙筆墨) 등을 마련하여 올린 서방색(書房色) 등 15종의 직함<sup>53)</sup>에 각 1명, 대전(大殿)의 기물을 관리하는 상세(尙洗) 등 9종 직함<sup>54)</sup>에 각 2명, 교서관에서 서책을 간행한 창준(唱准) 등 8종의 직함<sup>55)</sup>에 각 3명, 통역의 임무를 한 통사(通事)와 상제(尙除) 등 2종의 직함이 각 5명, 의원(醫員)과 견마배 등 2종의 직함이 각 6명, 사약이 8명, 전근랑(展勤郎)이 12명 그리고 녹사(錄事)가 13명이었다. 공생(貢生)이 16명이고 별좌가 20명, 별감이 34명이며 서리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43종의 직함을 가진 356명이 중인 신분의 정국원종공신이었다.

따라서 정국원종공신 중 중인의 신분을 가진자는 약 14.8%인 494명이었다.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보니 1등에서는 20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2등공신 중 약 11.6%인 118명에 해당한다. 3등에서는 3등공신 1,906명 중 18.6%에 해당하는 356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 4.2.3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장희홍, 2004,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53-54.

“환관의 신분은 양인이나 양반의 본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역에 있어서 품계를 받기 때문에 중인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4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尙膳·尙冊·書題·前司鑰·效任郎·洗馬 등 6종이다.

5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牽馬陪·貢生·勤力副尉·同司鑰·滕勇副尉·別檢·尙冊·書題·樂生·展勤郎·前司鑰·唱准·親軍衛·效任郎 등 14종이다.

5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內需司·別坐·尙傳·典樂·畫員 등 4종이다.

5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尙門·尙冊·前別坐 등 3종이다.

53) 이에 속하는 직함은 內矢人·道流·勉功郎·奉務郎·司僕寺諸員·尙更·尙傳·尙烜·書房色·書員·審律·樂生·妻子·致効副尉 등 13종이다.

5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別檢·司謁·尙設·尙洗·尙苑·藥房使令·前別坐·前司鑰·畫員 등 9종이다.

55) 이에 속하는 직함은 勤力副尉·服勤郎·赴功郎·書題·典樂·諸員·唱准·效任郎 등 8종이다.

1등에서는 오위(五衛) 중 의홍위(義興衛)에 소속된 병종(兵種)인 보충대(補充隊)와 동약 방사령(同藥房使令) 등 2종의 직함은 각 1명, 응페두(鷹牌頭)는 2명으로 모두 3종의 직함에 4명이 속하였다.

2등에서는 왕이 사용하는 활을 만들던 장인인 궁인(弓人) 등 4종의 직함<sup>56)</sup>은 각 1명, 자신이 모시는 상관이나 주인의 신변을 호위하거나 명령을 받들기 위한 수행인인 반인(伴人)이 3명, 보충대 직함에는 6명,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兵種)인 정병(正兵)의 직함에는 11명, 오위 제(五衛制)의 중위(中衛)에 속했던 군인인 갑사(甲士)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8개의 직함에 38명으로 확인된다.

3등에서는 임금의 좌우(左右)에서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중앙군(中央軍)인 근장(近仗) 등 8종의 직함<sup>57)</sup>에 각 1명, 교서관(校書館)에 속하던 수장(守藏) 등 8개의 직함<sup>58)</sup>에는 각 2명, 군대에서 소리를 불던 취타수(吹打手)인 취라치(吹螺赤)와 양인 등 2개의 직함에는 각 4명, 장인(匠人)과 활을 만들던 궁인(弓人) 등 2개의 직함은 각 5명, 오위(五衛) 가운데 용양위(龍驤衛)에 속했던 중앙군의 한 병종인 대졸(隊卒)과 보충대(補充隊) 등 2개의 직함은 각 6명이 속한다. 그리고 태평소(大平疇)의 직함은 8명, 왕립음악기관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던 전문 음악인인 악공(樂工)의 직함에는 10명, 병조에

속한 하급직원인 나장(羅將)은 16명이며 일반 양인 농민 출신의 병종(兵種)인 정병(正兵)의 직함은 40명이고, 갑사(甲士)의 직함을 가진 공신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27개의 직함에 230명이 양인 신분을 가진 공신이었다.

이상과 같이 정국원종공신 3,340명 중 양인 신분에 속하는 1등공신은 4명, 2등공신은 38명, 3등 공신은 230명으로 전체 272명이며, 전체 공신 중 약 8.2%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인 계층이었다.

#### 4.2.4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천역(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사노(私奴) 2명과 본궁노(本宮奴) 8명으로 모두 10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천인 출신 군대인 장용위(壯勇衛) 등 7개 직함<sup>59)</sup>에 각 1명과 관노(官奴)가 8명, 사노가 13명, 본궁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10개의 직함에 65명이 있었다.

3등에서는 상의원노(尙衣院奴) 등 19개 직함<sup>60)</sup>에 각 1명, 예조노(禮曹奴) 등 5종의 직함<sup>61)</sup>에 각 2명, 군기시노(軍器寺奴) 등 5종의 직함<sup>62)</sup>은 각 3명, 제용감노(濟用監奴)는 4명이 속했다. 그리고 내첩시노(內贍寺奴)와 내자

5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弓人·隊卒·樂工·鷹牌頭 등 4종이다.

5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近仗·燈燭·水軍·驛子·前書房色·典錢官·漆匠·香匠 등 8종이다.

5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路隊·伴人·守藏·養馬·理馬·阜隸·彭排·向化 등 8종이다.

5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內需司奴·內資司奴·司贍寺奴·尙衣院奴·議政府奴·壯勇衛·忠勤府奴 등 7종이다.

6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尙衣院奴·養賢庫奴·藝文館奴·禮貢寺奴·瓦署奴·奉常寺奴·義盈庫奴·司匱署奴·長興庫奴·昭格署奴·千西學奴·明通寺奴·忠勤府奴·工曹奴·漢城府奴·司導寺奴·刑曹奴·訓鍊院奴·戶曹奴 등 19종이다.

6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禮曹奴·白丁·司贍寺奴·繕工監奴·宗簿寺奴 등 5종이다.

시노(內資寺奴) 등 2종의 직함에는 각 5명, 내수사노(內需司奴)와 충의부노(忠翊府奴) 등 2종의 직함은 각 6명, 장례원노(掌隸院奴)의 직함은 9명, 사노와 본궁노의 직함에는 각 13명, 관노는 18명으로 모두 38종의 직함에 123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국원종공신 3,340명 중 천인 신분의 공신은 1등공신 10명과 2등공신 65명 및 3등공신 123명으로 전체 공신 중 약 5.9%에 해당하는 198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종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과 같이 『정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4종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이 2,376명, 중인이 494명, 양인 272명, 천인이 198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71.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를 다시 각 등급별로 신분을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표 21〉과 같다.

〈표 20〉 靖國原從功臣 중 身分別 分析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384	2,376	71.1	
	2等	795			
	3等	1,197			
中人	1等	20	494	14.8	
	2等	118			
	3等	356			
良人	1等	4	272	8.2	
	2等	38			
	3等	230			
賤人	1等	10	198	5.9	
	2等	65			
	3等	123			
合計		3,340	100		

〈표 21〉 等級別 身分 分析

구분	1等		2等		3等		합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兩班	384	91.9	795	78.2	1,197	62.8	2,376
中人	20	4.8	118	11.6	356	18.7	494
良人	4	1.0	38	3.7	230	12.0	272
賤人	10	2.3	65	6.5	123	6.5	198
合計	418	100	1,016	100	1,906	100	3,340

6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軍器寺奴·軍資監奴·司僕寺奴·仁壽府奴·壯勇衛 등 5종이다.

〈표 21〉과 같이 1등공신 418명 중 양반 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인 20명, 양인 4명, 천인 10명이 있었다. 1등공신은 대부분 양반의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인 공신을 확인함으로써 당시에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등공신 1,016명 가운데 양반은 795명, 중인 118명, 양인 38명과 천인 65명순이었다. 3등공신 1,906명 중 양반은 1,197명이었고 중인 356명, 양인 230명, 천인은 12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각 등급에 따른 신분별 비율을 살펴보면 양반 신분이 가장 많았으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통해 신분의 제약 없이 정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양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인, 양인, 천인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위 관료들이나 왕과 가까운 친척 등은 비교적 등급이 높은 공신으로

책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3 後代 削籍者 分析

연구대상 녹권에는 이미 기재된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후에 먹색으로 지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조사된 2종의 녹권인 개인소장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을 대비하여 삭제된 인물을 조사하니 개인소장본에는 13명, 성암고서박물관본에는 11명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2종의 녹권에서 11개의 삭제자 사항은 같으나 개인소장본과 달리 성암고서박물관본에서 지우지 않은 삭제자 2명은 백정이었던 조미륵과 조당래이다. 녹권의 소장처별 이들의 삭제 흔적의 유무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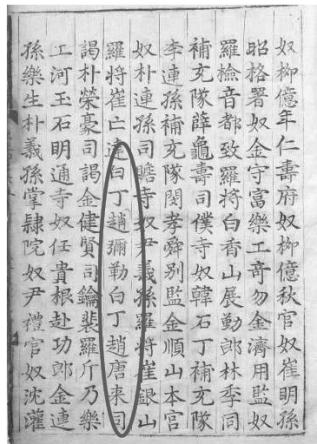
공신의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공신 책봉 및 녹권의 발급이 있은 후에 역모 등의 이유로 왕

〈표 22〉 『정국원공공신녹권』의 삭제자 관련 사항

순번	등급	직함	성명	삭제 해당사항	
				개인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본
1	1등	內禁衛	柳濱	○	○
2		正郎	尹龜壽	○	○
3		前大司成	李顥	○	○
4		牧使	李菴	○	○
5	2등	禦侮將軍	孫淡	○	○
6		彰信校尉	孫洧	○	○
7		學生	魏繼倫	○	○
8		習讀官	柳興祖	○	○
9	3등	學生	尹金碩	○	○
10		學生	尹磻	○	○
11		承義副尉	李仁傑	○	○
12		白丁	趙彌勒	○	×
13		白丁	趙唐來	○	×



개인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본

〈그림 5〉 녹권 소장처별 삭적자 흔적의 유무

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나라를 위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 일을 공신 관련 전담관서를 두어 공신 책봉을 비롯한 공신녹권의 반사, 공신 관련 행사 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하였다. 이때의 공신녹권은 공신을 책봉할 때 그 사실을 등재하여 공신호를 받은 이에게 나누어준 문권(文券)으로, 나라에서 내려준 일종의 공문서(公文書)이다. 즉 이러한 공문서에서 나라의 명령으로 공신의 기록을 지워 없애 버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은 경우, 같은 종류의 녹권임에도 공신의 기록 삭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하였으나 공신 기록의 삭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행해졌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신 기록의 삭적은 공문서 성격을 보이는 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나라의 명으로 행해진 것 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국원종공신녹권』에 보이는 삭적자는 어떠한 이유로 녹권의 기록에서 지워졌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실록』 기사를 찾아본 결과, 1등원 종공신이었던 4명 모두와 2등원종공신이었던 손유, 유흥조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다. 그 기록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이과(李顥)는 그의 아버지 이창신(李昌臣)과 함께 연산군대의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전라도로 귀양을 갔었다. 1506년, 이과는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군사반란을 계획했다. 전라도에 귀양을 와있던 유빈(柳濱), 광주목사 이줄(李茁) 등 전라도 관리들과 함께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전국에 격서를 보냈는데,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에게도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격서를 보냈다. 그리하여 8월 30일, 전라도를 출발하여 한양으로 향하던 중에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먼저 거사함으로써 연산군이 폐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1507년 6월 17일에 중종은 이과, 유빈 등의 공을 인정하여 뒤늦게 종국공신 4등에 책봉하였으나 삼사의 여론이 부정적이었다. 결국 6일만인 6월 23일, 중종은 자신의

〈표 23〉 삭적자와 관련 있는 『실록』의 기사 내용

날짜			기사 내용
연	월	일	
1506	09	08	공신을 책봉하다
	12	01	좌의정 박원종 등이 유빈 · 이과 · 김준손 등의 반정 격문을 사책(史冊)에 적으라 아뢰다
	05	17	전 대사성 이과가 병인년 의거 때에 이줄이 고변하려 했음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06	06	좌의정 박원종 · 장산 부원군 성희안 등이 이줄의 과지(過旨)를 청하다
	06	17	병조 판서 유빈 등은 정국공신 4등, 옥과 현감 김개 등은 원종공신 1등에 추가하도록 명하다
	06	18	대간이 합사하여 유빈 · 이과 · 김준손 등을 공신록에 올린 것은 그릇됨을 논하다
1507	06	23	유빈 등은 원종공신 1등에, 김개 등은 원종공신 2등에 올릴 것을 명하다
	08	26	전 우림위 노영손이 하원수 등의 역모를 고변하니, 직접 친문하다 이과의 공초 병조 정랑 윤귀수의 공초 손유의 공초
		29	이과 · 하원수 · 손유는 능지처사, 윤귀수 · 신희철 · 유흥조 · 유영 · 윤천령은 결장 1백에 유 삼천리에 처하다
		09	역모를 밝히는 데 공이 있는 자를 추서하도록 명하다

명령을 취소하고 이과, 유빈 등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했다. 이에 정국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이과를 중심으로 종친 이찬(李纘: 河源守), 윤귀수(尹龜壽), 손유(孫洧) 등이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박원종과 성희안을 제거하고 종종을 몰아낸 후 견성군(甄城君)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즉 역모를 도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을 8월 26일, 노영손(盧永孫)이 승정원에 고변을 한 것이다.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잡아들여 공초를 받아 8월 29일, 이들을 극형에 처하고 정국원종공신의 명단에서 삭적하였다. 9월 1일에 이과의 역모를 막는 데에 공을 세운 자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정난(定難)공신이다.

〈표 22〉에 나타난 삭적자 13명 중 6명은 『실록』 기사에서 그 삭적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외의 7명의 삭적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과의 역모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5. 結 論

이 연구는 1507년 중종반정에 힘쓴 공으로 책봉된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정국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현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발급사유를 비롯하여 형태 · 체제 ·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국원종공신녹권』은 중종이 1506-7년에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자신을 왕위로 추대하는 데 힘쓴 3,340명(1등 418명, 2등 1,016명, 3등 1,906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증명서이다.

둘째, 『정국원종공신녹권』은 현재 2책, 즉 개인소장본이자 보물 제900-6호 지정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을 확인하였다. 그 중 전자의 녹권에 서만 수급자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1등 김석

필(金錫弼)이었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다만 성암고서박물관본은 가장 앞 장이 찢겨 있어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셋째, 『정국원종공신녹권』은 1507년에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으로 이조의 관리 하에 발급하였다. 이 녹권의 서지적 특징은 사주단면,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의 형태를 보인다. 대부분의 녹권의 경우 권수제면, 포상 규정 및 특전, 광국공신도감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부분의 3곳에 주인(朱印)되나 이 녹권의 경우는 뚜렷한 규칙 없이 여러 군데에 '吏曹之印'의 인장을 주인했다.

넷째, 『정국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대체로 다른 녹권의 형식과 동일한데,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 및 수결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정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3,340명으로, 이들이 3등급으로 구분되어 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188종의 직함에 모두 418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은 92명, 중6품에 해당하는 50명, 종4품은 32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내금위의 직함을 가진 공신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등원종공신은 433종의 직함에 모두 1,016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품계가 없는 사람이 340명, 정3품이 123명이었으며 종6품이 80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품계를 갖지 않는 학생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금위 90명, 본궁노 37명의 순서대로 많이 기재되었다. 3등원종공신은 260종의 직함에 모두 1,906명이었으며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거나 품계를 갖지 못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1,120명으로 많은 공신들이 구성되었고 정3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131명, 종6품은 87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학생이 345명, 품계가 낮은 서리가 171명, 내금위 116명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정국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432종이며 학생은 487명, 내금위가 236명, 서리가 181명이었고 갑사 116명, 충순위 63명 순으로 인원수가 많았다. 또한 모든 등급에서 양반을 비롯하여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재됨으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정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양반 384명, 중인 20명, 양인 4명, 천인 10명이었고, 2등원종공신은 양반 795명, 중인 118명, 양인 38명, 천인 65명이었다. 3등은 양반 1,197명, 중인 356명, 양인 230명, 천인 12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양반 신분이 가장 많았으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통해 신분의 제약 없이 정국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양반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중인, 양인, 천인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위 관료들이나 왕과 가까운 친척 등은 비교적 등급이 높은 공신으로 책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정국원종공신녹권』에는 삙적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삙적된 사람은 모두 13명이나 개인소장본과 성암고서박물관본의 삙적자가

11명은 동일하나 2명이 상이했다. 이에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정국 정공신으로 책봉되지 못한 이과를 비롯한 사람들로, 이에 불만을 품어 역모를 꾀한 연유로 사직되었으며, 훗날의 정난(定難) 공신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빌급 대상자의 내용과 직함을 분석한 결과, 등급이 낮아질수록 직함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신분을 분석한 결과 양반뿐 아니라 중인, 양

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아 천대를 받던 천인에게까지 공신으로 책봉하여 포상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조선시대 원종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조선 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신 녹훈 사실을 토대로 조선시대 신분사 및 인물사 연구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經國大典』.
- [2] 『光國原從功臣錄券』. (개인소장본)
- [3] 『靖國原從功臣錄券』. (개인소장본)
- [4] 『朝鮮王朝實錄』.
- [5] 『佐翼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본)
- [6] 『佐理原從功臣錄券』. (성암고서박물관본)
- [7] 『平難原從功臣錄券』. (국립중앙도서관본)
- [8] 成綜護 編. 1974. 『昌寧成氏族譜』. 서울: 昌寧成氏大宗會.
- [9] 扶安金氏大同譜所 編. 1960. 『扶安金氏世譜』. 扶安: 扶安金氏大同譜所.
- [10] 신명호. 2002.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 [11] 李成茂. 1995.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一潮閣.
- [12] 장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13] 千惠奉. 1993.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 [14] 千惠奉. 2006.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 [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6] 韓永愚. 1997.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 [17] 林基榮. 2002.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18] 朴文烈, 閔庚錄. 2003.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 『박물관보』, 제16호: 64-100.

- [19] 성인근. 2008. 『조선시대 印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20] 李成茂. 1976.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13: 173-191.
- [21] 장희홍. 2004.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22] 鄭杜熙. 1981. 朝鮮 世祖-成宗期의 功臣研究. 『震壇學報』, 51: 131-181.
- [23] 秦奈伶. 2008.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25] 秦奈伶. 2008.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391-415.
- [24] 秦奈伶. 2009.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427-456.
- [26] 崔承熙. 1998.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22: 113-157.
-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online]. [cited 2012.9.15].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 [2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online]. [2012.6.25]. <<http://people.aks.ac.k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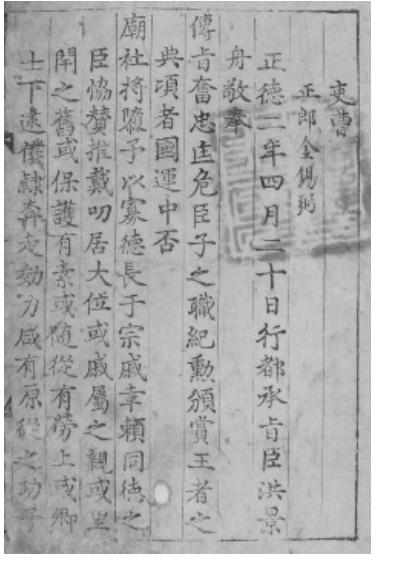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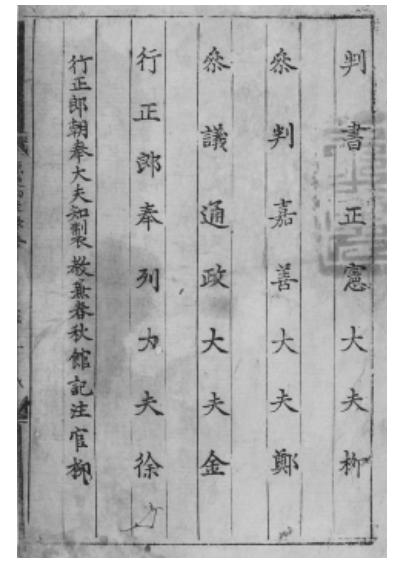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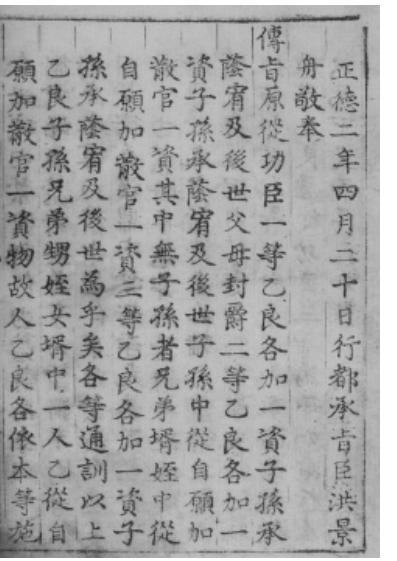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yung Gukdaejeon.*
- [2] *Gwang-Kuk Wonjong Gongsin-Nokgwon.*
- [3] *Jeong-Kuk Wonjong Gongsin-Nokgwon.*
- [4] *Joseon Wangjo Sillok.*
- [5] *Jwaik Wonjong Gongsin-Nokgwon.*
- [6]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 [7] *Pyeongnan Wonjong Gongsin-Nokgwon.*
- [8] Seong, Jong-ho, ed. 1974. *Genealogy of Changnyeong Seong-ssi*. Seoul: Chang Nyeong, Seong's Family.
- [9] Buan Kim's Family. 1960. *Genealogy of Buan Kim-ssi*. Buan: Buan Kim's Family.
- [10] Shin, Myeong-ho. 2002. *Joseon's Meritorious Retainers*. Seoul: Garam.
- [11] Lee, Seong-mu. 1995. *A Study of Yangban Society of Joseon Dynasty*. Seoul: Iljogak.
- [12] Chang, Se-gyeong. 2001. *Dictionary of the "Idu"*. Seoul: Hanyang University.
- [13] Cheon, Hye-bong. 1993. *The Korean Books of Metal Type*. Seoul: Beomwoosa.
- [14] Cheon, Hye-bong. 2006. *The Korean Bibliography*. Seoul: Mineumsa.
- [15]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4. *Encyclopedia of Korea Culture*.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16] Han, Yeong-u. 1997. *Social Status in Early Chosön Dynasty*. Seoul: Jipmoondang.

- [17] Lim, Gi-yeong. 2003. *A Bibliographical Study on Gongsin-Nokgwon Awarded after Japanese Invasion*. M.A.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18] Park, Moon-Year, & Min, Gyeong-rok. 2003. "Shin Gyeonghui's Pyeong-Nan Wonjong Gongsin-Nokgwon." *Museum*, 15: 64-100.
- [19] Seong, In-geun. 2008. *A Study on Stamp of the Choson Dynasty*. Ph.D. dis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 Lee, Seong-mu. 1976. "The system of social standing in early Chosun Dynasty." *Dong-A Munhwa*, 13: 173-191.
- [21] Jang, Hui-heung. 2004. *A Study on the Chosen's Eunuch*. Ph.D. diss., Dong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2] Jeong, Du-hui. 1981. "The study of Sejo-Seonjo period's Gongsin in Chosun Dynasty." *Jindan*, 51: 131-181.
- [23] Jin, Na-young. 2008. *A Study in Printed Books of Gongsin-Nokgwon in Chosun Dynasty*.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4] Jin, Na-young. 2008. "A study in Jwa-ik Wonjong Gongsin-Nokgw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391-415.
- [25] Jin, Na-young. 2009. "A study in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427-456.
- [26] Choi, Seung-hui. 1998. "The social status system in the late Choson Dynasty." *Hankook Munhwa*, 1998: 113-157.
- [27] EncyKorea. [online]. [cited 2012.9.15].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 [28] A General Information System of Korean Historical Figures. [online]. [cited 2012.6.25].  
<<http://people.aks.ac.kr/index.jsp>>.

[附錄] 靖國原從功臣錄券 書影

	
<p>등급이 바뀌는 면</p>	<p>권수제면</p>
	
<p>녹권 간행 담당관원의 직함과 성명의 면</p>	<p>포상규정 및 특전이 시작되는 면</p>